

##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(안)

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1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충북의 산업구조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지식·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·육성 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빌딩 건립계획에 따라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

○ 오창과학산업단지 벤처빌딩 건립

- 위 치 : 오창과학산업단지 C&S Valley 벤처전용공단
- 규 모 : 1,500평 [지하1층, 지상4층]
- 용 도 : 벤처집적시설
- 기 간 : 2001. 7월~2003. 12월(30개월)

- 사업비 : 5,000,000천원
- 재원 : 특별교부세 2,900,000천원, 도비 2,100,000천원
- ※ 도비확보 : 2001년 5억, 2002년 10억, 2003년 6억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
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식·기술 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·육성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 단지 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자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이나

- ⇒ 본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교부세 29억원을 제외한 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

**붙임 :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(안)**